

청주지방법원 2023. 10. 24 선고 2022가단559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(개명 전 이름: B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

담당변호사 어수용

피 고 C

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신인순

변 론 종 결 2023. 7. 11.

판 결 선 고 2023. 10. 2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 전 1,652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체결한 2018. 4.

11.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 및 2018. 6. 14.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

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1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원고는 D에게 2017. 6. 14.부터 2017. 7. 24.까지 150,000,000원을 대여하고, 2017. 7. 24.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후 그 개발이익금과 위 대여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D의 처분행위 및 근저당권 말소

- 1)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, 2018. 4. 12.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, 2018. 6. 14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피고 명의로 마쳐 주었다.
- 2)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. 7. 11. 채권최고액 105,0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F조합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. 6. 29. 말소되었다.

다. 이 사건 토지의 합병

이 사건 토지와 청주시 상당구 G 5,189㎡가 2018. 7. 15. H 전 8,702㎡에 합병되었다. 그후 위 H 토지에서 2018. 8. 31. I 전 1,725㎡ 및 J 전 95㎡, 2018. 10. 18. K 전 2,451㎡가 각 분할되었다.

다. 관련 소송

1) ① 원고는 2019. 10. 23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1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소(이 법원 2019가단33951, 이하 ‘이 사건 전소’라 한다)를 제기하였다가 2019. 12. 9. 위 소를 취하하였다.

② 또한 원고는 2019. 10. 23.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위 H 전 4,431㎡ 및 위와 같이 분할된 I 전 1,725㎡, J 전 95㎡ 및 K 전 2,451㎡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(이 법원 2019카단51656, 이하 ‘이 사건 가압류 신청’이라 한다)을 제기하여 2019. 11. 5.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9. 12. 10. 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다.

③ 위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토대로 한 채무초과 상황이 기재되어 있었다.

2) 한편 D은 2019. 11. 29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(이 법원 2019가합14155, 이하 ‘이 사건 관련 별소’라 한다)를 제기하여 2021. 10. 1.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,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. 12. 2.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.

라. 이 사건 소 제기

원고는 2022. 4. 20.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[인정근거] 갑 제1, 2호증, 제4호증의 1, 제7, 8호증의 각 1, 2, 제9호증의 1 내지 4, 을 제7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본안전항변

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제기 당시인 2019. 10. 23.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.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.

나. 관련 법리

- 1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(민법 제406조 제2항),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.
- 2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- 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, D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D 소유 부동산 가액이 자신의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함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소 및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.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전소 및 가압류 신청 제기 당시인 2019. 10. 23.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(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별소에서 D이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별소에서 D이 받은 패소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).
- 2)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9. 10. 23.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2. 4. 20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판사 이승훈